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58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정태호 · 권철승 · 김문수
김 윤 · 김태선 · 진성준
김영환 · 황명선 · 김주영
조정식 · 이학영 · 홍기원
전현희 · 이수진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수렴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로 주민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숙의공론장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등의 의견을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숙의공론장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수렴 등)</u> 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로 주민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숙의공론장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등의 의견을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숙의공론장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